

의정부지방법원 2025. 1. 7 선고 2021가단13761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송대리인 A, B

피 고 1. C

2. D

3. E

변 론 종 결 2024. 8. 20.

판 결 선 고 2025. 1. 7.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와 주식회사 F 사이에 2020. 10. 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피고 D와 주식회사 F 사이에 2020. 10. 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피고 E와 주식회사 F 사이에 2020. 11.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의정부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2. 5.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49,200,000원,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48,000,000원,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300,000,000원을 각 삭제하고, 이를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과 주식회사 F 사이에 2020. 11.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의정부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2. 5.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49,200,000원을 16,783,181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48,000,000원을 16,351,960원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300,000,000원을 235,935,14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4,966,346원을 109,031,205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하여

가. 인용하는 부분(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계약)○ 피보전채권: 2017. 6. 21.자 대출계약에 의한 잔여 원금 5,817만 원, 2020. 10. 7.자 대출계약에 의한 원금 5,000만 원(갑 제1, 3 내지 5호증)

○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채무초과: 피고들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F의 적극재산은 총 20억 2,593만 7,000원(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양주시 H 도로 137㎡, I 대 23㎡) 가량이고 소극재산은 원고 및 기업은행 등 10곳 총 27억 7,217만 원 가량으로 채무초과 상태(갑 제7, 8, 10, 13, 15, 16호증, 의정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한 각 문서송부촉탁 결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 사해행위: 채무초과 상태의 F이 수인의 채권자 중 일부인 피고들에게 공동담보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피고 C,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F이 위 피고들로부터 원사를 계속하여 공급받아 회사를 갱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기각하는 부분(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E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살피건대, 을다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지상에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위 건물을 완공한 수급인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민법 제666조에 의하여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가지므로, 이를 근거로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피고 E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도 같은 이유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은 피고 E이 신축한 건물에 한하여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 E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상회복에 관하여

갑 제9,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G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22. 5. 17. 근저당권자인 피고 C에게 4,920만 원, 피고 D에게 4,800만 원, 피고 E에게 3억 원,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4,496만 6,34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2. 5. 23.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과 F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들이 위 부동산에 관한 정당한 근저당권자임을 전제로 이뤄진 이 사건 배당은 위법하다.

한편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7조).

이 사건의 경우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피고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피고 E에 관하여는 일부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만 취소하는 바이므로 이 판결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각 삭제하고, 이를 다시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영

별지